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07 발의연월일: 2024. 12. 11.

발 의 자:허 영·위성곤·박성준

임호선 • 전재수 • 박 정

이훈기 · 김영진 · 강훈식

진성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·세출 결산검사를 하고,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,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,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, 내용, 기간 등을 통지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출 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하며,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감 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7조 및 제41조).

법률 제 호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3항 중 "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"을 "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"로, "한다"를 "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감사 대상자
- 2. 감사의 목적
- 3. 자료제출의 이유 및 내용
- 4.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- ⑥ 감사원은 감사를 종료한 후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자료 수집 이유, 자료 수집 내용, 사용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감사원은 감사를 종료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 여야 하거나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 를 보유할 수 있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의 방법, 통보 절차, 자료의 폐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

한다.

제41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햀 개 정 아 제27조(출석답변·자료제출·봉 제27조(출석답변·자료제출・봉 인 등) ① • ② (생 략) 인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--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 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. -----하며,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 <신 설> 1. 감사 대상자 <u><신</u>설> 2. 감사의 목적 <u><신</u>설> 3. 자료제출의 이유 및 내용 <신 설> 4.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 하는 사항 ④·⑤ (생략) ④·⑤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⑥ 감사원은 감사를 종료한 후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자료 수집 이유, 자료 수집 내용, 사 용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 <신 설> ⑦ 감사원은 감사를 종료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 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감사 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<신 설>

제41조(검사보고 사항) 「헌법」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~ 9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10.</u> (생 략)

유가	있는	경우	자료를	보유할
수 있	다.			

8	제]	[항투	트	ズ	<u> </u> 7항	·까ス	에/	서
<u>규정</u>	한	사형) -	외에	자	·료저	출	의
<u>방법</u>	, <u>E</u>	통보	절	차,	자료	E의	폐	<u>フ]</u>
<u>방법</u>	등	-에	필요	2한	사형	하은	감/	사
<u>원규</u>	칙으	으로	정	한다	<u>•</u>			

제41조(검사보고	사항)	

~ 9. (현행과 같음)
10.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
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